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4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4395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7 선고 2019가단1018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박재상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7. 9

판결선 고 2020. 8. 20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7. 선고 2019가단10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61,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남매지간으로, 원고가 2010. 9. 16.부터 2011. 3. 22.까지 급성췌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① 2010. 5. 31.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합계 50,820,178원이나,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의 병원비 또는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8,359,636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 22,460,542원(= 50,820,178원 - 28,359,636원)을 부당이득하였다.

② 피고는 평소 J, K과 금전거래가 많았는데, 2011. 3. 8. 원고의 통장에서 J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바로 피고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취하였고, 2011. 4. 15. 원고의 통장에서 K에게 2,4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준 후이를 변제받아 부당이득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C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합계 12,00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41,861,042원(= 22,460,542원 + 5,000,000원 + 2,400,000원 + 12,000,5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861,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갑 제1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급성췌장질 환을 원인으로 2010. 9. 16.부터 2011. 2. 19.까지 L병원,M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원고 통장에서 2011. 3. 8. J에게 5, 000, 000원이,2011. 4. 15. K에게 2, 400, 000원이,2011. 3. 17.부터 2014. 8. 18.까지 C에게 합계 12,000,500원이,2010. 5. 31.부터 2011.1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50,820,178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C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태환판사 류연중판사 이성기